

#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Policy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이다. 활동보조 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매일 보조하는 서비스로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목욕, 옷입기, 몸단장, 용변, 외출, 교육, 훈련보조, 의사소통 등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이다.<sup>1)</sup>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는 1980년대 이후 주요 외국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과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통적인 이념이었던 개별 모델(Personal model)과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과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및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 및 사회적 모델을 구현하는 실천적 제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이념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이념적 지형을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별모델 혹은 재활모델이 지배적인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모델 및 자립생활 이념이 소개된 이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제공

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 2006.

하는 각종 서비스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 외국의 경험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이념의 주도권이 개별 및 재활 모델에서 자립생활 및 사회적 모델로 급격히 변모한 데에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장애인들의 복지권 확보 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복지권 확보 운동은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급속한 변화를 주도하는 지배적인 흐름이다. 2001년 1월 국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가 계기가 되어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지속적인 대정부 운동은 결국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및 건설교통부의 관련 법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또 다른 복지권 확보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

장애인 복지권 확보 운동의 2006년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으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주축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 인천, 대구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올해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사 천막농성, 장관 및 시장 면담시도, 중증장애인 활동가 삭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정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과는 별도로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7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앞서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활동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다.<sup>2)</sup>

이렇듯 전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기로 결정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권 확보 운동의 또 다른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의 도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바라는 측면에서 성급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문가 그룹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시행을 둘러싸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글에서는 우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념적 토대를 살펴본 후, 선진 외국의 사례로서 영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주요 이슈별로 비교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애인복지의 동향과 활동보조서비스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적·임상적 서비스는 장애인의 치료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치료 또는 의료적인 모델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장애의 원인과 관련된 개념적인 구조가 재정립되고, 장애를 단순히 장애인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생태학적인 모델이 등장하였다.<sup>3)</sup> 이러한 개념적 변화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활동수행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Support system)가 더욱 논의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의 강조,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등이 최근 변화된 외국의 장애인복지개념의 추세이다.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 위생, 식사, 옷입기, 가사, 외출, 직업수행, 의사소통 및 여가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 개인의 욕구, 역량, 환경, 선호도와 희망정도에 따라 맞춤형되어 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서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해 장애인이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일반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는 비공식적으로 집에서 가족들에 의해 제공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시설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적·건축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장애인을 돌보았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칸디나비아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 재원으로 운용되는 재가 및 지역사회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자립생활과 장애인권운동의 확산으로 EU와 미국의 장애인 분야 지도자들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재가 및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탈시설화 운동과 더불어 특히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의 자립생활 운동은 이용자의 통제와 이용자 중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촉구하였다. 자립생활은 자기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활동을 선택하고, 궁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www.ssr.or.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6. 9. 27), 뉴시스(2006. 11. 23), 연합뉴스 보도자료(2006. 11. 14)

3) Litvak, S. and Enders, A. 2000. "The interface between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pp711-733 in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edited by Albrecht, G. et al, Sage publication.

4) Ratzka, A., 2004, Model National Personal Assistance Policy,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극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자신의 지원체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 또는 자기결정은 장애인들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계획, 도구, 협력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제의 정도와 자기 결정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상태에 달라질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대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전문가의 역할은 장애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적절한 도구 및 기술의 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sup>5)</sup>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전문가 및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생활의 영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은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sup>6)</sup>

1989년 4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개최된 제1회 유럽자립생활컨퍼런스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의미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가 설립되었으며, 더불어 14개의 국가기구가 스트라스부르결의안이라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일련의 원칙과 정책 조언을 체결했다. 결의안에 포함된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인권 및 시민권에 기초
-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 가정, 직장, 학교, 여가 및 정치 활동 등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참여를 촉진
- 하루 24시간, 주 7일까지 이용 가능
- 신체수발, 의사소통, 가사, 이동 및 기타 활동 원조

스트라스부르 결의안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의 계획, 실시, 개발을 포함하는 정책결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계서

6) Askheim, O., 2005, "Personal assistance-direct payments or alternative public services. Does it matter for promotion of user control?", Disability and Society, Vol. 20, No. 3, pp. 247~260.

### 3. 주요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sup>7)</sup>

본 글에서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주요 6개국의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7개 모델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활동보조서비스 모델들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여 자립생활, 소비자 개입, 소비자 주도, 자기 결정, 지역사회 참여라는 주요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모델

국가	활동보조서비스 모델
영국	직접 급여(Direct Payment) / 지방자치단체 제공 급여(Local Authority provision) 자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미국	버지니아주 소비자 주도 활동보조서비스(Consumer-Directed PAS)
스웨덴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 모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활동보조서비스(Attendant Care Programme)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접기금프로그램(the Direct Funding Programme)
노르웨이	올로바(Uloba) 소비자 주도 활동보조서비스

자료: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

위에 제시된 6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7가지 모델을 서비스 영역,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수급 판정 절차, 서비스(급여) 수준,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서비스 영역

6개의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은 다양하며, 서비스의 영역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뿐만 아니라 자격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7)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1) 자격조건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어떤 모델은 서비스나 급여를 모든 장애 유형(연령이나 욕구정도 같은 어느 정도의 자격조건을 만족시키면 됨)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로 신체적인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의 직접급여는 정신 건강과 범죄 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장애아동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6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지만, 자립생활기금의 경우에는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을 기금 수혜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자립이 극히 제한된 시설 생활자나 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델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자격 요건으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서는 자기 지시(self-directing)가 가능한 사람과 활동보조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manage)할 수 있는 사람만을 활동보조서비스의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캐나다 온타리오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수급 요건**

구분	자기 지시(self-directing)	활동보조서비스 관리(manage attendant service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li> <li>• 자신의 보호 욕구 특성과 수준 인식하기</li> <li>• 활동보조인의 일정 조정 및 활동보조인 부재의 경우 대안적 수단 강구하기</li> <li>• 활동보조인에 대한 훈련, 지도감독, 교육, 및 의사소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보조인의 채용, 고용 및 해고</li> <li>• 활동보조인의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하기</li> <li>• 급여의 관리 및 지출에 대해 설명하기</li> <li>• 활동보조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전달하기</li> </ul>

자료: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

(2)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넓은 의미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도움을 주어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신체수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교육 및 직업 활동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모델은 서비스 인정 시간 또는 급여 수준에 기초한 차등지원(sliding scale of assistanc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모델은 급여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신체수발과 가사지원과 같은 필수적인 것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 모델의 급여 수급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욕구에 기초하여 자신들이 지출하기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의 서비스는 옷입기, 목단장, 목욕하기와 같은 일상생활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의 자립생활기금제도는 사회활동 지원이 아닌 신체수발(옷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침대에 눕기/일어나기, 집안 걸기) 지원을 본래의 서비스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립생활기금의 사용 용도가 가정내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개인이 학업, 여가 또는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체수발 지원의 범위가 직장 출근 및 학교 통학 지원까지 확대되어 이러한 용도에도 급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 및 학업 수행을 위한 급여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2) 서비스 전달체계

6개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분권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한 모델(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미국 버지니아)들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전달체계도 구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지방 전달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직접기금 프로그램은 온타리오보건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센터 온타리오주 네트워크(ONILC)와 협력관계에 있는 토론토 자립생활센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직접기금의 기존 수급자는 온타리오주내 어디로 이주하던지 관계없이 새로 이주한 지역내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평가 없이 직접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서도 서비스 수급권은 지역내 특정 기관이 아닌 장애인에게 귀속된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주신체장애연합(PDSNSW)은 이 점을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거시적 정책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간 급여수준의 불일치라는 잠재적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 회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사회보험에 의해 개인별 원조요구에 대해 평가(사정)받게 되며, 이러한 욕구는 주당 서비스 시간으로 산출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은 서비스 시간당 가격을 부과하며, 지방정부 또는 국가 사회보험은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월액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직접급여 제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금을 지원해서 소비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사정된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인에게 직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 3) 서비스 수급 평가(사정)

영국의 자립생활기금모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일차적으로 신청자의 욕구를 사정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수립한 포괄적인 보호 계획(package of care)은 자립생활기금 소속 방문 사회복지사(ILF visiting social worker)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방문 사회복지사가 작성하는 최종 보고서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 신청자의 기능수행 수준, 현재 제공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 재정 상태 및 추가적인 욕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서는 자립생활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서비스를 요구하는 개인에 대해서 욕구사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들은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항목별 표준화된 수행시간 척도와 그 외 운동이나 학업 지원과 같은 개별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신청자의 환경적인 여건이 더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결정하기 위해 가정, 학교, 또는 직장환경의 평가도 사정 과정에 포함되며, 주택개조 또는 재활보조기구 구입 비용을 지원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이 더 용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 4) 서비스(급여) 수준

각 모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영국의 직접급여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직접급여의 합법적인 최저액이나 최고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토대로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한편 자립생활기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주당 최대 375파운드까지 지급하지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추가되면 주당 625파운드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과 자원을 고려하며, 본인부담금의 수준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수입과 지출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이 때 소득에서 장애와 관련된 지출, 원천징수액, 부양수당, 민간건강보험의 보험료, 맞벌이부부의 자녀 양육비 등은 공제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한 달에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제공받는 평균 시간은 월 97.9시간(주당 24.5시간)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최대 양은 개인당 하루에 평균 6시간, 한 달에 최소 182.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대부분의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은 자립생활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각 모델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통제권은 영국의 직접급여와 스웨덴의 경우처럼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모델에서부터, 활동보조인의 채용과 시간 및 업무 할당의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노르웨이의 모델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여된 통제권의 범위는 매우 넓다. 대부분의 모델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이 받는 서비스를 관리하고 활동보조인의 고용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직접급여의 경우 수급자는 고용주로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립생활기금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일단 보호 시간이 산출되면, 서비스 이용자가 한 주 동안의 활동보조서비

스 제공 시간을 결정하며,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서비스 일정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활동보조인의 채용과 관련된 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협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활동보조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평가된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조합이 활동보조인의 고용주가 되며, 서비스 이용자인 회원은 활동보조인의 수퍼바이저로서 채용, 훈련, 계획, 수퍼비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장애인이 급여 한도 내에서 자신이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관리할 책임을 전적으로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업무를 부여하며,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 6)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훈련과 지원 유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버지니아주의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예비사정 및 이용자의 자립생활기술 개발
- 활동보조인 관리 훈련, 인터뷰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
-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기적인 신규채용
- 장애인의 전형적인 욕구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립생활 초점에 대한 활동보조인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시 이용 가능한 활동보조인 명부 작성

또한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회원들이 활동보조인의 고용주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누구라도 자립생활조합의 회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유능한 기존 회원이 신입회원에게 필요한 수퍼바이저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된 회원들은 자신의 활동보조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된다.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은 또한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와 관련된 정보, 충고, 경험 및 식견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동료 지원 회의(peer support session)를 실시한다.

## 4. 결론 및 정책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선진 외국의 다양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의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서비스이자 그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의 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신체 수발과 가사활동 지원을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하고 나아가 직업 및 학교생활, 의사소통, 여가활동을 포함 하한 삶의 전 영역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의 고용,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동보조서비스의 수급 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있는 전문 인력들이 서비스 신청자의 기능수준 및 욕구, 사회활동 정도,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판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선진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한 고찰은 결국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넓게는 전체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로서 좁게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하나로써, 해당 국가의 지배적인 사회복지 이념 및 장애인복지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2007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준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의 수급 요건, 서비스 영역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판정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 및 책임, 활동보조인 제공 방안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완전한 설계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활동보조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그룹, 장애인 당사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우리 여건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 선진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비교

구분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직접급여/지방자치단체 채급여	직립생활기금(NIF)	버지니아주 소비자 중심 활동보조서비스	스톡홀름 직립생활조 함(STIL)	뉴시우스웨일즈 활동 보조서비스	온타리오주 직접급여 프로그램	올로바 소비자 중심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는 자 및 16세 이상의 모든 개인(정신 건강 과 법적 영양보 구속되어 있는 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입소 및 시설 입소의 해제가 높은 자는 기금 수혜 자격 없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립이 극히 제한된 자 및 시설생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지시가 가능한 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li> </ul>	-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수행우연기 식탁하기 목적으로 참여(누가일 아니기 참여 강)</li> <li>사회활동(출퇴근, 통학 보조)</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연기 물단지 무료원기 외 다른 일상생활로 제한</li> </ul>	-
서비스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적 방식</li> <li>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인을 많이 허용</li> <li>지방민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직접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적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적 방식</li> <li>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인을 많이 허용</li> <li>지방정부나 국가회보함 이 서비스 시기에 해당하는 비용 지불(월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적 방식</li> <li>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인을 많이 허용</li> <li>가주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 수급권이 이용자에게 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적 방식</li> <li>온타리오보건부의 기금 지원 토론토 직립생활센터에 의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적 방식</li> <li>자치권과 지방정부의 개인을 많이 허용</li> </ul>	
서비스 수급 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 지사가 신청자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 직립생활기금 소속 방문 사회복지사와 논의 후 종합적인 포괄적인 맞춤계획 수립</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 중심 모델에 근거하여 욕구사정</li> </ul>	-	
서비스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한 직접급여의 최소액. 최대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제원에 기초하여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립생활기금은 주당 최대 375파운드까지 지불</li> <li>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추가 되면 주당 625파운드까지 지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 수준 결정시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인의 소득과 지원 고려</li> <li>본인부담금은 소비자 수입 과 지출에 기초하여 선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달에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필요로 하는 자에 게 서비스 제공)</li> <li>지립받는 평균 시간(주당 한 달에 97.9시간(주당 24.5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보조서비스의 최대 양은 개인당 하루 평균 6시간 한 달 최소 182.5시간</li> </ul>	-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의 고용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직립생활기금은 이용자 의 책임 수행을 위해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가 한 주 동안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계획</li> <li>개인 소비자 및 활동보조 인이 협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퍼바이저, 채용 훈련 계획 수립 등의 책임</li> <li>급여는 활동보조인의 고용 및 서비스 구매(사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인을 관리할 책임</li> <li>자신의 욕구에 따라 활동보조의 고용, 급여, 스케줄 조정 지출 관리</li> </ul>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버사정 소비자의 직립생활 기술 개발</li> <li>개인원조관리 훈련</li> <li>활동보조인의 정기적인 신규교육</li> <li>직립생활 조정에 대한 활동보조인 오리엔테이션</li> <li>활동보조인 명부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욕구 시정 활동보조인 광고 구좌자 인터넷 알선표 계획 및 직무계약 설정 훈련</li> <li>활동보조인의 감독 및 해고 등 수퍼바이저 과목 지원</li> </ul>	-	-	

주: 빈 공간은 자료의 제약으로 기술하지 못하였음.  
 자료: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isability Agenda – Issue 03, 'International Practice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4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하였음.